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21. 2. 3.(수) 10:02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한상혁 위 원 장
김효재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안형환 상임위원 (4인)

- 불참위원 : 김 현 부위원장 (1인)

제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0시 02분 개회 】

1. 성원보고

- 한상혁 위원장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희수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다섯 분 중 네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권희수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한상혁 위원장
 - 2021년도 제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차회의록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제3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과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21-04-005~007)

○ 한상혁 위원장

- 먼저, <의결안건 가>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소라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직무대리

-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 의결주문입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해 ‘6. 시정조치(안)’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입니다. 위치정보법 제30조제2항, 제32조를 위반한 에스케이텔레콤(주), (주)케이티, (주)엘지유플러스 등 위치정보사업자(이하 ‘이통3사’)에 대해 위치정보법 제43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안)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3> 조사개요입니다. 먼저 조사배경은 국회 지적,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위치정보법에 대한 위반소지가 인지된 이통3사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나> 조사대상은 에스케이텔레콤(주) 등 3개 사업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4> 조사결과입니다. 사업자 일반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반사항입니다. 첫째, 위치정보법 제30조제2항(긴급구조 개인위치정보 제공 등) 관련입니다. 이통3사는 위치정보법에 따라 긴급구조 관련 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제공 자료를 매 반기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 과방위에 보고하여야 하나, 에스케이텔레콤(주)은 4회 지연 보고한 사실이 있고, (주)케이티와 (주)엘지유플러스는 각 4회 미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보고자료 제출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위치정보법 제32조(통계자료의 제출 등) 관련입니다. 이통3사는 위치정보법에 따라 통계자료를 매 반기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회 과방위, 방통위에 제출하여야 하나, 에스케이텔레콤(주)은 3회 지연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케이티는 2회 지연 제출하였고, 1회 미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엘지유플러스는 2회 지연 제출, 1회 미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세한 제출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위법성 판단입니다. 먼저 사업자 지위는 이통3사는 위치정보법에 따라 허가받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및 신고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입니다. 관련 규정은 위치정보법 제30조(개인위치정보의 요청 및 방식 등)제2항, 제32조(통계자료의 제출 등)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인위치정보 관련 보고 위반 관련하여 이통3사가 위치정보법에 따라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지연 보고하거나

미보고한 행위는 위치정보법 제30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통계자료 제출 위반 관련하여 이통3사가 위치정보법에 따라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지연 제출하거나 미제출한 행위는 위치정보법 제32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사업자 의견 및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에스케이텔레콤(주)의 경우 지연하여 제출한 것은 '위치정보법 제32조를 위반하여 통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의 대상이 아니고 지연 제출한 자와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구분 없이 동일한 처분을 내리는 것은 비례·평등원칙에 위배되며,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위반행위의 내용과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은 2분의 1로 감경됨이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위치정보법은 제출 내용,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는 통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과태료는 위치정보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동기·내용·결과 등을 고려하여 부과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케이티의 경우 '18년 하반기 제출 자료는 KT 아현국사 통신국 화재 대응 등으로 미처 제출하지 못하고 '19년 상반기 자료에 함께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위치정보법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적 준수기간을 경과하여 약 9개월 이후에 제출한 행위는 미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엘지유플러스의 경우 위치정보법 관련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해 사전에 시정조치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하여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과태료는 위치정보법 시행령 등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동기 등을 고려하여 부과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시정조치(안)입니다. <가> 과태료 부과입니다. 기준금액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위반행위 건별로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과태료의 가중·감경입니다. 위반행위의 동기·내용·결과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및 감경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에 대해 지연 제출한 행위와 미제출한 행위를 구분하여 지연 제출한 행위는 기준금액으로, 미제출한 행위는 50% 가중하였습니다. 최종과태료는 에스케이텔레콤(주)의 경우 450만원, (주)케이티와 (주)엘지유플러스는 각각 525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개선권고 사항입니다. 에스케이텔레콤(주) 등 3개 사업자에 대해서 위치정보법에 따른 관련 자료를 국회 과방위와 방통위에 성실하게 제출하도록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1년 2월에 시정조치(안)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사무처 조사결과 이동통신3사는 재난위험지역 개인들에게 보낸 경보 내역과 또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 제공내역 제출 의무 등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위치정보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규정에 근거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정조치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재난인 코로나19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지역에 있는 개인들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구조가 시급한 사람들의 정확한 위치를 긴급구조기관 등과 공유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개인위치정보가 적절하게 활용되었는지 사후적으로라도

정부와 국회에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는 만큼 이동통신3사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앞으로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위치정보사업자인 이통3사가 부여된 국회 보고와 관련 통계자료 제출 의무는 아무리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의 제공과 이용이라도 국가기관에 의한 오남용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국민들의 민감정보인 개인 위치정보에 대한 보호에 앞장서야 할 이통3사가 법 취지와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회 보고 및 통계 제출을 누락하거나 지연한 행위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법 위반행위라 판단됩니다. 이에 사무처 시정조치(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통3사는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국민의 개인위치정보보호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저는 하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통신3사가 왜 지연하거나 미제출했다고 합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이소라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직무대리**

-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방통위에는 일단 저희가 제출요구를 했기 때문에 관리가 그래도 된 편이었는데 국회 쪽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규정에 대한 인지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방통위 차원에서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잘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이통3사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 **이소라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직무대리**

- 지연 제출한 것으로 보아서 모르고 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실무자가 챙기는 과정에서...

○ **김효재 상임위원**

- 법에 정한 규정을 이통3사들이 너무 가볍게 아는 것 아닌가 싶어서 드린 질문인데, 방통위에는 제대로 제출한 것 아닙니까?

○ **이소라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직무대리**

- 예, 대부분 제대로 제출하긴 하였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왜 방통위에는 제출하고 국회에는 제출하지 않았지요?

○ 이소라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직무대리

- 방통위는 저희가 제출요청 공문을 보냅니다. 언제까지 반기가 끝났으니 30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요청을 하는데 국회 쪽에서는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공문을 요청하는 부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이통3사들이 대관업무를 위해 국회에 파견 나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통3사들이 이번을 계기로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했습니까?

○ 이소라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직무대리

- 예. 그래서 개선권고도 나갈 예정이고, 재발방지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했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단단하게 일러서, 국회가 제출해야 하는 것은 국민에게 보고하는 것인데 정부에 보고하면서 국회를 가볍게 알았다는 것은 그들이 처벌받아 마땅하고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원안 동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조치의무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관련 성능평가 수행기관 지정에 관한 건 (2021-04-008)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조치의무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관련 성능평가 수행기관 지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주 인터넷윤리팀장

-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6 제2항 제3호에 따른 성능평가 수행기관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로 지정하여 고시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관련법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조치의무사업자는 이용자가 게재하려는 정보의 특징을 분석하여 불법촬영물등을 비교·식별 후 그 정보의 게재를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가기관이 개발하여 제공하는 기술 또는 방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가 최근 2년 이내에 시행한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을 사용해야 하는 바, 두 번째에 따른 성능평가 수행기관을 방통위에서 지정하여 고시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 경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이 건과 관련하여 규제

심사와 부처협의 및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였는데 모두 '해당 사항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능평가 수행기관 지정 고시(안)를 오늘 방통위에서 의결해 주시면 앞서 말씀드린 법에 따라 성능평가 수행기관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로 지정한다는 고시(안)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밑에 부칙으로 동 고시 재검토기한을 매 3년으로 해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이행하고자 하는 부칙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성능평가 수행기관으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를 지정하는 부분을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TTA, 즉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정보통신 표준을 제정하고 보급하거나 기술지원 등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88년에 설립된 이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4조에 의한 법정 법인입니다. 그간 비디오 콘텐츠 필터링 성능평가를 제정하는 연구를 추진하고 상용소프트웨어 분야별 평가기준을 개발하여 성능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이러한 업무경험을 토대로 했을 때 저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상 불법촬영물 등의 정보를 게재·제한 조치하는 사업자에게 사용 기술에 대한 성능평가를 수행할 기관으로 관련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지정고시기관으로 TTA를 의결하여 주시면 2월 초 관보에 게재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한 이후 TTA를 통해 성능평가 지표 등을 마련하고 성능평가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작년 12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웹하드 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 그러니까 '직전 3개월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또는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 중 SNS·커뮤니티·대화방, 인터넷개인방송,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이렇게 규정해 놓았는데 이런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올해 12월부터 이행해야 합니다. 기술적 조치 성능평가기관으로 관련 경험이 풍부한 TTA를 지정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근절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식들이 활발하게 도입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현재 저희 방통위에서도 디지털 성범죄물의 특징값을 추출하여 필터링하는 표준 DNA 데이터 베이스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러한 DNA 필터링 기술도 신뢰를 얻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올 한 해 심혈을 기울여서 다시는 n번방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고생했습니다. 이번 성능평가 수행기관 지정을 통해 올해 말부터 시행되는 불법촬영물 사전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도 웹하드 사업자에게 적용된 음란물 필터링 의무화가 필터링 우회 회피기술 등으로 웹하드상 음란물이 근절되지 못한

사례가 있어 왔습니다. 이런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지정기관에서는 세심하고 철저하게 기술 성능평가를 수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사무처에서도 지난 12월 10일부터 시행된 법령이 실효성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효재 위원님 원안 동의 의견이셨지요?

○ **김효재 상임위원**

- 원안 동의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일치된 원안 동의 의견이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방송통신 결합판매 허위·과장광고 가이드라인」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 **한상혁 위원장**

- 마지막으로 <보고안건 가> “ 「방송통신 결합판매 허위·과장광고 가이드라인」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성철 통신시장조사과장**

- 「방송통신 결합판매 허위·과장광고 가이드라인」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보고 사유입니다. 2015년 제정 이후 나타난 새로운 위반 사례 반영, 사업자의 자율조치 강화 등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추진 경과입니다. 2020년 9월 9일 통신4사에 대해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차례에 걸쳐 통신4사, MSO 5사, KAIT, KCTA 등 이해관계자와 의견수렴을 거친 바 있습니다. 작년 12월 통신시장조사과 결합판매 정책협의회에서 개정안을 사전 검토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목적 확대입니다. 기존 위법행위 예방 목적에서 위법행위 예방 뿐 아니라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사업자의 광고 표시사항을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분류기준 변경입니다. 과장·기만광고에 대해 관련 법령의 분류기준 등을 준용하여 분류기준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세 번째, 신유형 사례 반영입니다. 방통위가 방송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실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새로운 허위·과장광고 사례를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어 정의 등입니다. 용어정의 가운데 다른 법규에 정의되어 있어 중복되는 용어(대리점, 판매점, 경품)는 제외하고 ‘중요한 이용조건’을 정의하여 신설 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자의 자체 모니터링 등 관리강화, 대리점·판매점 종사자 교육, 온라인

광고 시 기준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제목, 용어정의, 분류기준 등을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고, 실제적인 위반사례와 제적인 위반사례와 대안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사업자 등에 대해 자율 활동 강화, 기준 명확화 등을 통해 허위·과장광고 감소를 유도하여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강화하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보고를 접수해 주시면 가이드라인을 각 통신사업자의 현장에 배포해서 광고물 제작과 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은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은 「방송통신 결합판매 가이드라인」 일부개정안을 붙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이것이 바로 배포가 되는 것이지요? 제작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까?

○ 진성철 통신시장조사과장

- 오늘 보고를 접수해 주시면 바로 현장에 배포해서 2월 한 달간 제작과정을 거쳐 3월부터 적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3월부터 시행되는 것이지요?

○ 진성철 통신시장조사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그러면 대리점에서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소비자들도 직접 볼 수 있는 것입니까?

○ 진성철 통신시장조사과장

- 대리점에서 입간판이나 온라인 광고시 이런 내용을 준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도 당연히 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이것을 다 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준다는 것이지요?

○ 진성철 통신시장조사과장

- 온라인에서도 볼 수 있고 오프라인에서도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작년 9월에 방송통신 결합판매 허위·과장광고를 한 통신4사에 대해 방통위가 총 8.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허위·과장광고가 일부에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을 이번에 개정해서 결합상품 허위·과장광고 관련 최신 위반사례들을 추가하고 이용자의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사업자가 알려야 하는 사안들을 새롭게 넣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에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사업자들이 그것이 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경우보다는 알고도 의도적으로 속이는 경우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보다 엄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처에서는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사업자들에게 널리 또 충분히 계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와 함께 사업자들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더욱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해 9월 우리 위원회에서는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한 통신사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사실조사에서 드러났던 다양한 불법 광고사례 등을 반영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은 당연한 후속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에서는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끝나지 말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주기적인 조사와 함께 관련 유통점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동의 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원안 동의 의견이셨습니다. 추가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8. 기 타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안형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우리 위원회와 민주당 사이에 당정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언론보도를 통해 아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7월 말에도 당정협의회, 아니 당정청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역시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야당에서는 불법 당정회의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께 묻고 싶습니다. 이 당정회의가 불법이었습니까?

○ 한상혁 위원장

- 당정협의회를 금하고 있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

- 비밀회의였습니까? 그것은 아니었지요?

○ 한상혁 위원장

- 공개회의였지요.

○ 안형환 상임위원

-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왜 공개회의이고 불법회의가 아니었다는 데 공식 일정에서는 이 사안이 빠져 있었습니까? 이 문제는 우리 운영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당정협의 안건이라고 이 문건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회의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다른 위원들은 몰라야 하는지 저는 상당히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 당정회의가 불법인지, 합법인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회가 정치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또 원치 않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민과 우리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퍼블릭 서비스(public service), 즉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목적을 위해 움직이는 행정기관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정회의가 불법이라는 지적이 없다고 하시는데 앞으로 당정회의를 만약에 한다면 참석자가 누가 되어야 하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이번에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습니다. 다른 분이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가신 것으로 보도를 통해 알았는데 그렇다면 참석범위는 위원장님입니까, 부위원장님입니까? 여당 추천 몫의 위원들입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참석하신다면 앞으로 야당 추천 몫의 위원이 부위원장이 됐을 때는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두 분이 아니라 다른 여당 추천 위원 몫은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당정협의회 참석 멤버의 구성을 보더라도 당정협의회가 우리 위원회가 규정하고 있는 또 위원회의 성격인 합의제 정신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정협의회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최성호 사무처장

- 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위원회 일정관리는 사무처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일정을 공개하거나 알려드릴 때 어떤 부분은 담지 않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관례적으로 당정협의를 담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처 내에서 상의해서 가능하면 공식 일정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칙을 정해서 알리는 방법을 고민하겠습니다. 이번 경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관례적으로 해 왔던 것을 그대로 따랐던 것이고, 앞으로는 개선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당정협의회 참석자는 당에서 설명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 당에서 요청하기도 합니다. 누가 참석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꼭 부위원장님이라서 참석, 이것보다는 당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당정협의회 참석 멤버는 저희가 그분들과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해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앞으로 최대한 사무처에서 필요한 내용들은 위원님들께 설명하는 자리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이 사안은 사무처에 관한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회 내부에서 벌어진 일을 종종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약간 바보가 된 느낌이라고 할까요, 얹혀 놓고 무엇을 하나 하는 매우 불쾌한 느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번의 경우 당정협의회는 과거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지금의 야당이 여당일 때도 당정협의회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자리에서 지금 정치적 중립성이 매우 요구되는 방송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는가 하는 것이 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다음 날 저에게 가지고 와서 설명한 바로는 방송과 관련된 부분은 없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참석자에 의해 야당에 흘러 들어가서 방송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 그것과 관련해서 “여당 의원의 질문에 답했을 뿐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형환 위원님 말씀대로 본 위원회가 정치화되는 것은 저도 반대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여당이 벌써 두 번에 걸쳐 당정협의라는 이름으로 방송과 관련된 이야기를 야당 추천 위원들과는 전혀 상의 없이 여당과 하고 계시다면 그것은 저희들에게는 매우 유감이고 그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일단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정식으로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안전에 대해 논의하실 것이었으면 안전을 제안하시고 그 안전 처리와 관련된 논의방식에 대해 먼저 선행적으로 이야기하셨어야 하는데 적절치 못한 방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논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논의방식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고 진행하시겠습니까?

○ 김효재 상임위원

- 논의방식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고 진행하자고 한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안형환 상임위원

- 그렇게 하시지요.

○ 김창룡 상임위원

- 차후에 말씀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 안형환 상임위원

- 이것이 시의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안전을 다시 상정하고 논의하고 마무리 짓는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의사 처리와 관련해서 사무처에서 검토해서 이 부분을 다시 논의하기로 하지요. 다시 논의 하셔서 위원님들 사전에 의견을 묻고 정리해서 논의하도록 하지요.

○ 최성호 사무처장

- 지금 하는 것보다 검토해 보고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다른 논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기 회의는 별도 공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으로 2021년 제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34분 폐회】